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박지원 · 최혁진
조계원 · 서미화 · 차지호
부승찬 · 전용기 · 박수현
김남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출입국관리법」은 전공대학을 유학(D-2)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,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.

특히, 음악 · 패션 · 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-Culture(한류) 확산으로 인해,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(D-2)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 「출입국관리법」의 유학(D-2)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,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 잡고,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

제 해결과, 한류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산을 통한 내수시장
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
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의4제1항).

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제1항 중 “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4(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)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(이하 “외국인유학생”이라 한다)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(<u>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u> 이하 같다)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②・③ (생략)	제19조의4(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말한다.</u> <u>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 -----. ②・③ (현행과 같음)